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

서울시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www.seoul.go.kr

제4121호
2026. 1. 19.(월)



목 차

◆ 자치법규 등

[규 칙]

제4746호	서울특별시 규칙 어려운 용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규칙	2
제4747호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18
제4748호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28
제4749호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32
제4750호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35
제4751호	서울특별시 시민안전과수꾼 양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	41
제4752호	서울특별시 어울림플라자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43
제4753호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50
제4754호	서울특별시 환경보건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54
제4755호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56
제4756호	서울특별시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	60
제4757호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	62
제4758호	서울특별시 청원경찰 징계 규칙 일부개정규칙	64
제4759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66
제4760호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68
제4761호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74

자치법규 등

[규 칙]

◆ 서울특별시규칙 제4746호

**서울특별시 규칙 어려운 용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규칙**

서울특별시 규칙 어려운 용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6년 1월 19일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규칙의 어려운 용어를 올바른 우리말로 순화하고, 현행화가 필요한 인용조문 등을 정비하여 자치법규에 대한 시민의 이해도와 접근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서울특별시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설치·운영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설치·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용어의 정의)”를 “(정의)”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호”를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호”로 한다.

제3조(「서울특별시 119항공대 운영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119항공대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한다.

제4조(「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한다.

제5조(「서울특별시기록관 운영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기록관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한다.

제6조(「서울특별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녹색제품 구

매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 을 “뜻은” 으로 한다.

제7조(「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 을 “뜻은” 으로 한다.

제8조(「서울특별시 동물원 관리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동물원 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용어의 정의)” 를 “(정의)” 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 을 “뜻은” 으로 한다.

제9조(「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시험의뢰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시험의뢰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 을 “뜻은” 으로 한다.

제10조(「서울특별시 서울종합방재센터 운영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서울종합방재센터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용어의 정의)” 를 “(정의)” 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 을 “뜻은” 으로 한다.

제11조(「서울특별시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 을 “뜻은” 으로 한다.

제12조(「서울특별시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 을 “뜻은” 으로 한다.

제13조(「서울특별시 온실식물원관리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온실식물원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용어의 정의)” 를 “(정의)” 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 을 “뜻은” 으로 한다.

제14조(「서울특별시 정보통신 보안업무 처리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정보통신 보안업무 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 을 “뜻은”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4호나목 중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를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2

조”로 하며, 같은 조 제19호 중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을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로 하고, 같은 조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0. “KOLAS 공인시험기관”이라 함은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운용요령」 제6조제9호에 규정된 「한국 인정기구 운용요령」 제2조제2호나목의 KOLAS 공인시험기관을 말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의3”으로 한다.

제15조(「서울특별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주택법」 제2조제3의2호”를 “「주택법」 제2조제5호 및 제8호”로 한다.

제16조(「서울특별시 통계사무처리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통계사무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통계문서에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6조”를 “통계문서에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6조”로 한다.

제17조(「서울특별시 행정서비스현장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행정서비스현장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한다.

제18조(「서울아리수본부 관사 운영·관리 규칙」의 개정) 서울아리수본부 관사 운영·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와”를 “다음과”로 한다.

제19조(「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와”를 “다음과”로 한다.

제20조(「서울특별시 수도자재 관리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수도자재 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와”를 “다음과”로 한다.

제21조(「서울특별시 외국인투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외국인투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와”를 “다음과”로 한다.

제22조(「서울특별시 자치법규집 편찬 및 관리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집 편찬 및 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와”를 “다음과”로 한다.

제23조(「서울특별시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와”를 “다음과”로 한다.

제24조(「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 다음 각 호와”를 “뜻은 다음과”로 한다.

제25조(「서울특별시 농업지도자 육성 지원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농업지도자 육성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 다음 각 호와”를 “뜻은 다음과”로 한다.

제26조(「서울특별시 도로보수 건설기계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로보수 건설기계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 다음 각 호와”를 “뜻은 다음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으로 한다.

제27조(「서울특별시 물재생센터 관사운영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물재생센터 관사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 다음 각 호와”를 “뜻은 다음과”로 한다.

제28조(「서울특별시 소방정 운영 및 관리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소방정 운영 및 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 다음 각 호와”를 “뜻은 다음과”로 한다.

제29조(「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 다음 각 호와”를 “뜻은 다음과”로 한다.

제30조(「서울특별시 정책실명제 운영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정책실명제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 다음 각 호와”를 “뜻은 다음과”로 한다.

제31조(「서울특별시 보안업무 처리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보안업무 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처리규칙”을 “규칙”으로, “정의는”을 “뜻은”으로 한다.

제32조(「서울특별시 외빈 영접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외빈 영접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외빈의 정의)”를 “(정의)”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한다.

제33조(「서울특별시 안전망병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안전망병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하는”을 “사용하는”으로 한다.

제34조(「서울특별시 공무원여비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무원여비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서울특별시 공무원여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를 “「서울특별시 공무원여비 조례」”로 한다.

제3조 중 “조례 제2조제3항”을 “「서울특별시 공무원여비 조례」 제2조제3항”으로 한다.

제35조(「서울특별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를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제5조”로 한다.

제36조(「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를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조례”를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로 한다.

제10조 중 “「서울특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37조(「서울특별시 해외주재관 근무에 관한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해외주재관 근무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주재관 “이라 함은”을 “주재관 이란”으로, “자매도시”를 “친선도시”로 한다.

제13조 후단 중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한다.

제38조(「서울특별시 공무용차량 관리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무용차량 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으로 한다.

제39조(「서울특별시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으로 한다.

제40조(「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으로 한다.

제41조(「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으로 한다.

제42조(「서울특별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를 “「서울특별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21조제3항”을 “「서울특별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28조제3항”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으로 한다.

제43조(「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으로 한다.

제44조(「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으로 한다.

제27조제3항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으로 한다.

제45조(「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

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4항 전단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으로 한다.

제18조제5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6조(「서울특별시 사무인계인수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47조(「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3호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48조(「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조례’”를 “‘조례’”로, “‘광장’”를 “‘광장’”으로, “‘신고자’”를 “‘신고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주무부서’”를 “‘주무부서’”로 한다.

제49조(「서울특별시 세무조사 운영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세무조사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5호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1호 중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7조제2항 중 “「부정청탁 및 금품등의 수수에 관한 법률」”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0조(「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를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를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51조(「서울특별시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감사관” 을 “감사위원장” 으로 한다.

제52조(「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5호 중 “리버버스” 를 “한강버스” 로 한다.

제53조(「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제5조제1항” 을 “제6조제1항” 으로 한다.

제54조(「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제8호” 를 “조례 제5조제2항제1호사목” 으로 한다.

제55조(「서울특별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행정안전부 장관” 을 “행정안전부장관” 으로 한다.

제56조(「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조제12호” 를 “제5조제13호” 로 한다.

제57조(「서울특별시 청년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청년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으로 한다.

제58조(「서울특별시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5호 중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의2제1항” 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의3제1항” 으로 한다.

제59조(「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3항제2호 중 “환경부” 를 “기후에너지환경부” 로 한다.

제60조(「서울특별시 119특수구조단 운영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119특수구조단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호 중 “「서울특별시 소방항공대 운영 규칙」”을 “「서울특별시 119항공대 운영 규칙」”으로 한다.

제61조(「서울특별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서울특별시 공간정보의 구축과 활용 등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제2항제3호 중 “「서울특별시 공간정보의 구축과 활용 등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62조(「서울특별시 공무원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무원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

제63조(「서울특별시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 1과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서울특별시 00기술교육원”을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00캠퍼스”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서울특별시 00기술교육원장”을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서울특별시〇〇기술교육원장”을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서울특별시00기술교육원”을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00캠퍼스”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서울특별시 00기술교육원장”을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같은 서식 중 “동법 시행령 제3조의2”를 “동법 시행령 제3조”로 하며, 같은 서식 중 “(최저생계비의 120%미만)임”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임”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〇〇기술교육원”을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00캠퍼스”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1]

[별표 1]

일시사용 시설 및 사용료(제13조 관련)

(단위: 원)

일시사용 유형	기준	사용료	직업교육훈련 시설현황
운동장	1시간 (시설별)	50,000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동부캠퍼스 운동장(4,073㎡) ※ 전체 면적 중 일부만 사용하는 경우 사용면적에 대해서만 부과할 수 있음
		5,000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중부캠퍼스 운동장(421㎡)
		10,000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남부캠퍼스 운동장(3,456㎡)
강의실(1실기준)	1시간 (1실)	20,000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공통 (실당 50인 미만 수용가능)
강 당	1시간	50,000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동부캠퍼스(250명),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중부캠퍼스(300명),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북부캠퍼스(300명)
	1시간	100,000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남부캠퍼스(800명)

※ 그 밖의 시설(컴퓨터실, 농구장 등)은 주변지역의 시설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시의 사전승인을 얻어 원장이 결정한다.

※ 사용에 따른 시설물 파손 발생 시 사용자는 그에 상응하는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별지 2]

[별지 제1호 서식]

응 시 원 서				
성 명			접수번호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상 주 소			제 1 지망	
연 락 처	전화번호	(휴대전화) (일반전화)	제 2 지망	
	전자우편		우선선발	
최 종 학 력			가점대상	
자기 소개서				
자기소개 (가치관 및 신념을 중심으로 작성)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에 지원한 이유(지원동기)				
교육과정을 통해 이루고 싶은 목표				
주민등록 현황, 취업확인 등의 자료조회를 위해 개인정보를 사용함에 동의하며,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00캠퍼스의 교육훈련생 모집에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장				

[별지 3]

[별지 제2호서식]

기숙사 이용 신청 및 서약서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 . . (남, 여)	
	훈련학과		학번		
	주소				
	보호자		보호자와 관계		
	거주형태	월세, 전세, 자가, ()		통학소요시간	
신청사유		1. 지체장애인 2. 저소득 가정 3. 교통불편 4. 기타()			
상기 본인은 기숙사생으로서 생활지도지침을 준수하고, 교육훈련에 매진함은 물론, 제반 준칙을 성실히 따를 것과 교육훈련생 상호간의 예절을 지키고, 교육훈련생의 품위를 잃지 않도록 노력하며, 규정위반에 따른 사고 및 손해발생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질 것을 보호자 연서로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호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장 귀하					
상담자 의견 : 상담인 (서명 또는 인)					

[별지 4]

[별지 제3호서식]

시설 일시사용 허가 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전 화	
	주 소		FAX	
사용시설명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00캠퍼스 000			
사용 목적				
사용 기간	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 (일간)
사용 인원				
기 타				
위와 같이 귀 기술교육원 시설을 사용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장 귀하				

[별지 5]

[별지 제4호서식]

차 상 위 계 층 확 인 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세 대 주 성 명	
세대주와의 관계	
용 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규정한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임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상자와의 관계 동장 귀 하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주민센터장 인	

※ 기타 법규에서 사용하는 양식으로 대체 가능

[별지 6]

[별지 제5호서식]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

훈련과정명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00캠퍼스	학과
훈련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서울특별시와 고용노동부에서는 직업교육훈련 지원제도 운영에 있어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직업교육 훈련관리 시스템 및 직업능력개발 정보망(HRD-Net)에 수집 · 이용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훈련비용 지원, 개인별 훈련이력 관리, 서울특별시와 정부의 직업교육훈련제도 실적 · 성과 평가, 모니터링(만족도 조사) 등에 활용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필수)/지문(선택)/휴대전화번호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직업교육 훈련관리 시스템 및 직업능력개발 정보망(HRD-Net)에서 수집, 계속 관리
- 직업교육훈련 지원제도 운영을 위해서는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가 필요하며, 서울특별시와 고용노동부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훈련생으로부터 제공받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 서울특별시와 고용노동부는 개인정보를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처리하고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를 제공한 훈련생은 언제나 자신이 입력한 개인정보의 열람 · 수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은 위 1. ~ 3.의 내용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지원제도 운영을 위해 개인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제공할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우리 시 규칙 내 어려운 용어, 현행화가 필요한 인용조문 및 부서 명칭 등을 일괄로 정비하여 규칙의 체계성과 시민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법령 및 조례 개정에 따른 제명, 인용조문 현행화
- 나. 조직개편(조직명 및 사무 변경)에 따른 부서명 정비
- 다. 그 밖의 경미한 오기 정정
- 라. 어려운 용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비

◆ 서울특별시규칙 제4747호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6년 1월 19일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규제개혁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규제개혁 기본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규제의 등록 및 입증책임) ① 각 실·본부·국장은 소관 규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전자정부법」 제65조에 따라 구축·운영되는 시도 행정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 창의규제담당관은 규제사무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규제의 명칭
2. 규제의 법적근거 및 내용
3. 규제의 처리기관
4. 규제의 시행과 관련된 하위법령 등의 내용
5. 규제를 규정한 조례 등의 공포일 또는 발령일과 규제의 시행일
6. 규제의 존속기한
7. 그 밖에 규제등록에 필요한 사항

②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직권으로 조사하여 등록되지 아니한 규제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실·본부·국장에게 지체 없이 이를 제1항에 따른 시도 행정정보시스템에 등록하게 하거나 해당 규제를 폐지하는 정비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각 실·본부·국장은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제3조(규제의 공표) 창의규제담당관은 제2조제1항의 규제사무목록과 「서울특별시 규제개혁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른 규제정비 종합계획을 서울특별시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2장 규제의 심사

제4조(규제영향분석의 평가요소 등) ① 실·본부·국장은 규제영향분석을 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계량화된 자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의 계량화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술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지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실·본부·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지침에 따라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규제영향분석서에는 그 작성에 관여한 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인적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5조(규제영향분석 자체심사) ① 실·본부·국장은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의 결과를 기초로 규제의 타당성에 대하여 자체심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심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실·본부·국장은 제1항에 따라 자체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규제의 필요성·정당성
2. 규제법정주의 준수 여부
3. 규제 수단의 적절성
4. 그 밖에 실·본부·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실·본부·국장은 제1항에 따라 자체심사를 한 경우에는 주요 심사의견과 심사결과를 포함한 자체심사의견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3장 규제의 정비 등

제6조(기존규제 정비요청의 처리 절차) ① 시장은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규제 정비의 요청을 받으면 해당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규제 소관부서의 소명에도 불구하고 기존규제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존규제를 정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4장 규제개혁위원회

제7조(위원회의 구성) 조례 제12조제3항제2호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3. 사회·경제·시민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3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
5. 그 밖에 규제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서면 또는 영상회의로 할 수 있다.

③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임명된 규제개혁 업무 소관 실·본부·국장인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거나 실무적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

원이 지정한 4급 이상 공무원이 대리참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참석한 공무원은 의결권한을 가진다.

④ 제1항에 따른 회의를 하는 경우 위원회의 간사는 심사목록 및 회의록 등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사전협의) ① 소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 입법안 및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중요문서에 규제사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사전협의를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 실시 전에 창의규제담당관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② 창의규제담당관은 법령·조례 등에 의견수렴 절차가 규정되어 있거나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11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창의규제담당관은 소관부서의 장이 사전협의 없이 자치법규 입법안을 입법예고하거나 중요문서를 고시·공고하려는 경우 소관부서에 사전협의를 의뢰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창의규제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사전협의의 의뢰를 받은 경우 해당 자치법규 및 중요문서에 조례 제11조제1호에 해당하는 규제사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소관부서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제출) ① 실·본부·국장은 제9조제4항의 사전협의 검토결과가 조례 제11조제1호에 해당하는 규제(규제의 존속기간 연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무담당관에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에 따른 법제심사 또는 중요문서 심사를 의뢰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첨부된 별지 서식의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요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안전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
2. 제5조제3항에 따른 자체심사의견서
3.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규제의 존속기한
4. 조례 제7조에 따른 시민·이해관계인·전문가 등의 제출의견 요지

제11조(예비심사) ① 위원회는 제10조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안전에 대해 제12조에 따른 심사를 받아야 할 중요규제인지를 결정하고, 이를 관계 실·본부·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중요규제가 아니라고 결정한 규제는 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1조의2(중요규제의 판단 기준)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요규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제로 한다.

1. 명백하게 진입이나 경쟁이 제한적인 성격의 규제
2. 국제기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에 비추어 규제 정도가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
3. 이해관계인 간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거나 사회·경제적으로 상당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규제
4. 규제 수준 및 정도가 현저히 부당하여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규제
5. 그 밖에 시장이 중요규제로 보아 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심사를 요청받은 규제가 제1항에 따른 중요규제 판단 기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더라도 이해관계인 간의 이견이 없으면서 다른 규제대안이 없는 경우 등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요규제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심사) ① 위원회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중요규제라고 결정한 규제에 대하여 안건을 제출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 및 규제의 존속기간 연장 여부의 결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1차에 한정하여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심사를 하는 경우, 위원회는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제출된 관계 실·본부·국장의 자체심사의견서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근거에 의하여 적절한 절차에 따라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0조제2항 각 호의 첨부서류 중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실·본부·국장에게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하는 데에 걸린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심사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사를 마친 때에는 그 결과를 관계 실·본부·국장에게 통보하고, 실·본부·국장은 통보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의견청취 등) ① 제10조에 따라 심의안건을 제출한 각 실·본부·국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조례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의견진술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에게 구술로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이해관계인·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은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회의개최일 전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14조(개선권고 및 재심사 등) ① 위원회는 제12조에 따른 심사결과에 따라 관계 실·본부·국장에게 해당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철회 또는 개선의 권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권고서를 관계 실·본부·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규제의 내용
2. 위원회의 심사의견
3.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
4.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에 대한 처리기한

③ 제2항에 따른 철회 또는 개선권고를 받은 실·본부·국장은 제2항제4호에 따른 처리기한 내에 위원회의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에 대한 조치를 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실·본부·국장은 조례 제5조제2항 단서에 의하여 위원회에 재심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4호에 따른 처리기한 내에 재심사의 대상이 된 규제의 내용과 재심사 요청의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재심사 요청을 받으면 그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사를 끝내고 그 결과를 관계 실·본부·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5장 규제총괄관

제16조(규제총괄관의 근무 형태) 조례 제20조에 따라 위촉된 규제총괄관은 비상근으로 하며, 주당 2일의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제17조(규제총괄관의 수당) ① 규제총괄관의 수당은 총 근무일수 및 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② 규제총괄관의 수당 단가는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6조에 따른 기준단가를 말한다)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 (제10조 관련)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요청서

의안번호	제 호
의 결 년 월 일	

심 의 의 결 사 항

(안)

제 출 자	○○○ 실·본부·국장
제출년월일	20 . . .

『
안』에 대한
신 설 · 강 화 규 제 검 토

I 제 · 개정안 개요

1. 제 · 개정사유

2. 주요내용



II 규제 심사(안)

1. 심사대상 규제내용

규제사무명	규 제 사 무 내 용	비고

2. 규제의 신설 · 강화의 목적

-
-

3. 규제의 법적근거 및 타당성

-
-

4. 관련 기관·단체 의견조회 결과

-
-

5. 규제 소관부서 자체심사 결과

- 일시 :
- 장소 :
- 참석 :
- 심사결과
 -
 -
 -

6. 규제의 존속기한

-

참고 자료

1. 제·개정안
2. 관련 법령(발췌)
3. 규제영향분석서
4. 자체심사의견서
5. 기타 현황 자료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에 따라 법적 정합성을 확보하고 관련 절차와 방법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규제개혁의 일관성·예측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서울특별시 규제개혁 기본 조례 시행규칙」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전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규칙의 명칭을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서 「서울특별시 규제개혁 기본 조례 시행규칙」으로 변경함
- 나. ‘규제영향분석의 평가요소 등’ 조항을 신설하여 규제영향분석 시 계량화된 자료를 우선 활용하고, 시장이 수립한 작성지침에 따라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함(제4조)
- 다. ‘규제영향분석 자체심사’ 조항을 신설하여 규제영향분석 결과에 대해 관계 실·본부·국장이 민간전문가와 함께 규제 타당성에 대한 자체심사를 실시하고 그 의견서를 작성하도록 명시함(제5조)
- 라. ‘기존규제 정비요청의 처리 절차’ 조항을 신설하여 시민·직능단체 등의 규제정비요청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도록 절차 규정을 도입하고,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정비를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함(제6조)
- 마. ‘중요규제의 판단 기준’ 조항을 신설하여 그 판단 기준으로 진입·경쟁 제한, 규제 수준의 현저한 부당성,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과도하고 불합리한 규제 등을 명시함(제11조의2)
- 바. ‘재심사’ 규정을 신설하여 관계 실·본부·국장이 규제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규제개혁의 절차적 정당성을 제고함(제14조)

◆ 서울특별시규칙 제4748호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2026년 1월 19일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공공예식장 대관료 감면 대상 시설 및 감면 범위(제2조 관련)

연번	감면대상 시설	위 치	감면범위
1	광진구청 대강당홀	광진구 자양동	전액감면
2	금천구 녹색광장 잔디마당	금천구 시흥동	전액감면
3	남산 장충 웨딩가든	중구 장충동2가	전액감면
4	남산 한남 웨딩가든	용산구 이태원동	전액감면
5	남산 호현 웨딩가든	중구 회현동1가	전액감면
6	노원구 화랑대 철도공원	노원구 공릉동	전액감면
7	도봉구청 선인봉홀	도봉구 방학동	전액감면
8	독섬 루프탑 웨딩홀	광진구 자양동	전액감면
9	마곡광장(썬큰마당)	강서구 마곡동	전액감면
10	망원 루프탑 웨딩홀	마포구 망원동	전액감면
11	매현시민의숲	서초구 양재동	전액감면
12	문화비축기지	마포구 성산동	전액감면
13	백인제가옥	종로구 가회동	전액감면
14	보라매시민안전체험관(다목적홀)	동작구 신대방동	전액감면
15	북서울 꿈의숲(창녕위궁재사)	강북구 번동	전액감면
16	북서울미술관(썬큰가든, 별광장)	노원구 중계동	전액감면
17	불암산 힐링타운 철쭉동산	노원구 중계동	전액감면
18	서대문 안산 잔디마당	서대문구 연희동	전액감면
19	서울도시건축전시관	중구 태평로1가	전액감면
20	서교생물문화센터 서교스퀘어	마포구 서교동	전액감면
21	서울물재생시설공단(마루공원)	강남구 일원동	전액감면
22	서울물재생시설공단(물재생공원)	강서구 마곡동	전액감면
23	서울새활용플라자	성동구 용답동	전액감면
24	서울수상레포츠센터 루프탑 웨딩홀	마포구 상암동	전액감면
25	서울숲 설경정원	성동구 성수동1가	전액감면
26	서울시 인재개발원(인재홀)	서초구 서초동	전액감면
27	서울시립대 자작마루	동대문구 전농동	전액감면

연번	감면대상 시설	위 치	감면범위
28	서울식물원 사색의 정원	강서구 마곡동	전액감면
29	서울식물원 잔디마당	강서구 마곡동	전액감면
30	서울여성플라자 피움서울	동작구 대방동	전액감면
31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대강당홀)	강남구 개포동	전액감면
32	서울한방진흥센터(야외마당)	동대문구 제기동	전액감면
33	선유도공원 (원형무대)	영등포구 양화동	전액감면
34	세종문화회관(예인마당)	종로구 세종로	전액감면
35	솔밭근린공원	강북구 우이동	전액감면
36	압구정 루프탑 웨딩홀	강남구 압구정동	전액감면
37	어린이대공원 포시즌가든	광진구 능동	전액감면
38	어울림플라자 공연장	강서구 등촌동	전액감면
39	여의도 루프탑 웨딩홀	영등포구 여의도동	전액감면
40	여의도 한강공원 물빛무대	영등포구 여의도동	전액감면
41	용산가족공원(연못광장)	용산구 용산동6가	전액감면
42	용산아트홀 전시장	용산구 이태원동	전액감면
43	월드컵공원 평화의 공원(새록결혼식)	마포구 상암동	전액감면
44	월드컵공원 평화잔디광장	마포구 상암동	전액감면
45	잠실 루프탑 웨딩홀	송파구 잠실동	전액감면
46	청년예술창 SAPY	서대문구 총정로3가	전액감면
47	초안산 가드닝센터	도봉구 창동	전액감면
48	초안산 하늘꽃정원	도봉구 창동	전액감면
49	카페마루 웨딩홀	중구 서소문동	전액감면
50	푸른수목원 잔디마당	구로구 향동	전액감면
51	한강공원 광나루 장미원	강동구 암사동	전액감면
52	한성백제박물관 하늘정원 루프탑	송파구 방이동	전액감면
53	SETEC 컨벤션홀	강남구 대치동	전액감면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서울시 공공예식장 운영과 관련하여 시설 변경 및 확대에 따라 감면 근거가 필요한 시설의 명단을 시행규칙의 별표에 변경·추가하여 감면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서울시 공공예식장 감면 시설 추가 및 시설 명칭 현행화(별표)

◆ 서울특별시규칙 제4749호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6년 1월 19일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3조를 각각 제3조 및 제4조로 하고,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이용대상)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의2에 따른 서울형 키즈카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그 동반 아동으로 한다.

1.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2.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직장의 종사자, 자영업자 또는 학교 재학생

제3조(중전의 제2조) 중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를 “조례”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별표]

서울형 키즈카페 이용료

구분	대 상	이용요금
이용료	아동 (0세 ~ 9세)	5,000원/인/회
* 돌봄서비스 이용 시 돌봄비 2,000원/인/회 추가		

※ 우리동네키움센터(초등학생 전용시설)와 결합형인 서울형 키즈카페의 경우에는 초등학교 전학년 이용 가능

※ 주된 용도를 달리하고 있는 시설 안의 어린이 이용 공간을 서울형 키즈카페로 편입하는 경우, 해당 시설의 기존 이용대상 및 이용요금 유지 가능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반영하여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서울형 키즈카페 이용대상 규정 신설(제2조)
- 나. 용어 통일 및 중복규정 삭제

◆ 서울특별시규칙 제4750호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6년 1월 19일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遊漁行爲) 는” 을 “(遊漁行爲)는” 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을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5호 중 “자” 를 “사람” 으로 한다.

제13조제1호 중 “판매소(이하 “봉투판매소”)” 를 “판매소(이하 “봉투판매소”)” 로 한다.

제15조제2항 전단 중 “시민이용” 을 “시민이용 분과, 치수안전” 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 제2호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이용료 감면범위(제8조 관련)

1. 별표 1의 이용시설

감 면 대 상	감면율(%)
가. 한강의 보전 및 이용과 관련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100
나. 한강의 보전 및 이용과 관련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행사	100 이내
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다만, 동행하는 보호자에 대한 감면 시설 및 시기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50
라.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해당 법률에 의한 국가보훈등록증(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포함한다) 등 관련 증서를 제시한 사람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사람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해당하는 사람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해당하는 사람 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4조의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0
마.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으로 귀환용사증 또는 귀환용사 가족증 등 관련 증서를 제시한 사람	50
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증서를 제시한 사람	50 (다만, 별표 1 제2호 체육시설에 한함)
사. 65세 이상의 노인(신분증을 소지한 자에 한함)	50
아. 6세 미만의 영유아(증빙자료 소지한 자에 한함)	50
자.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카드에 등재된 가족 포함)	50
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로 관련 서류를 제시한 사람	50
카. 시장이 인정하는 「한강을 보전·이용하는 공동체활동」 참여자 ※ 한강공동체 활동 참가자 확인증을 소지한 단체에 한함	50 (다만, 별표 1 제6호

감 면 대 상	감면율(%)
	유흥시설, 제7호 공원편의시설(주차 장)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함)
타.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에서 규 정한 교육기관의 장이 추천한 토요일 교외체험학습 참여자 50 인 이하(방학기간 제외) ※ 신청서(표준서식 본부 홈페이지 참조) 승인자에 한함	100 (다만, 별표 1 제6호 유흥시설, 제7호 공원편의시설(주차 장)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함)
파.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보호대상 아동으로서 해당 시설장이 신청한 10인 이상 50인 이하 이용 자 ※ 신청서(표준서식 본부 홈페이지 참조) 승인자에 한함	50 (다만, 별표 1 제6호 유흥시설, 제7호 공원편의시설(주차 장)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함)

- ※ 주차장, 여의도 물빛무대, 한강르네상스호 대여, 서울수상레포츠센터 감면규정은 별도로 정함
- ※ 별표 1의 이용시설 중 감면대상이 중복되는 경우 감면율이 높은 항목 1개만 적용함
- ※ 체육시설의 이용료 감면은 팀 구성원 50% 이상의 인원이 감면대상에 해당할 시 적용함<신설>
- ※ 감면은 현장 감면에 한함 (추후 감면 불가) <신설>

2. 주차장

감 면 대 상	감면율(%)	비 고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후원하는 행사 차량	100	
나. 도로교통법 제2조 제20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100	
다.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서울특별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100	발행일로부터 1년간
라.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하는 경우	80	
마.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해당 법률에 의한 관련 증서를 제시한 사람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2호·제13호·제15호,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상이자로서 국가유공자 증서를 제시한 경우 2.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에 등록한 사실이 확인된 사람 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의사자로서 의사자증을 제시한 경우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독립유공자로서 독립유공자증을 제시한 사람	80	
바.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와 이륜자동차,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50	
사.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가 5.18민주유공자 증서를 소지하고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	50	1시간 범위 내 100%
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에 등록한 사실이 확인된 사람	20	
자.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가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하는 경우	20	
차.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4조의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훈보상대상자증을 제시한 경우	50	
카. 한강공원을 3시간 초과하여 이용하는 시민의 차량의 경우 3시간 초과시간에 대한 이용료	30	다만, 여의도한강공원 2주차장(마포대교 남단, 한강 본류호 안쪽)은 적용 제외
타. 전통시장에서 구매한 영수증을 제시하는 차량	30	
파.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동이 행복카드 소지자(두자녀 이상)	50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 한강시민위원회의 조직 정비 내용을 반영하고, 이용료 감면대상 확대에 따른 자격 및 절차를 명확히 하여 이용자의 편의와 행정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한강시민위원회 조직정비에 따른 치수안전 분과 신설(제15조)
- 나. 이용료 감면 대상의 확대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시행규칙에 구체적인 감면 대상 기준을 명확히 규정(별표 2 제1호, 제2호)

◆ 서울특별시규칙 제4751호

서울특별시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

서울특별시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6년 1월 19일

서울특별시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폐지이유와 주요내용 > —

1. 폐지이유

- 상위 조례인 「서울특별시 시민안전과수꾼 양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26.1.1일자로 폐지됨에 따라 규칙을 별도로 유지할 필요가 없어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서울특별시 시민안전과수꾼 양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

◆ 서울특별시규칙 제4752호

서울특별시 어울림플라자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어울림플라자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6년 1월 19일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어울림플라자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서울특별시 어울림플라자(이하 “어울림플라자”라 한다) 관리·운영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을 따른다.

제3조(이용료 부과·징수) ① 「서울특별시 어울림플라자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이용료는 별표 1에 따라 1개월 단위로 부과·징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2개월 이상의 이용료 등을 납부하고자 할 경우 2개월 이상의 이용료 등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③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신청서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이용료의 감면) 조례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이용자의 경우 감면율은 별표 2에 따르되, 운영자는 이와 관련한 증빙자료 등을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이용료의 반환) ①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이용자가 시설 이용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이미 납부한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이용 개시일 이전 취소 : 전액 반환

2. 이용 개시일 이후 취소 : 납부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일할 계산 반환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이용이 취소되거나 중지되는 경우에는 납부한 이용료 중 사용하지 아니한 일수에 해당하는 이용료 납부액의 전액을 반환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국가적 행사, 서울특별시 또는 어울림플라자의 관리·운영 위탁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 이용의 사용이 취소 또는 중지된 경우

③ 이용료의 반환과 관련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제6조(대관 신청) ① 시장은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대관을 허가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관공간 및 일정 등이 포함된 대관계획을 대관 가능일 1개월 전까지 어울림플라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대관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관기간, 대관장소 및 면적 등이 포함된 대관허가신청서를 제1항의 대관계획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허가 취소 등의 사유로 인하여 휴식공간이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대관을 허가하는 경우에 대관료와 납부방법이 포함된 대관허가서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어울림플라자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관허가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④ 대관 허가를 받은 자(이하 “대관자”라 한다)가 대관허가를 받은 후 대관허가 내용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대관허가 변경·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대관료 부과 및 감면)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어울림플라자의 대관료 부과기준 및 조례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른 대관료 감면범위는 별표 3에 따르되, 운영자는 이와 관련한 증빙자료 등을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대관료의 반환) ① 조례 제8조제1호에 따라 대관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관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대관 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대관이 취소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이미 대관자가 납부한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취소 신청서 제출 시 대관 시작일까지 10일 이상 남은 때 : 대관료 납부액 전액 반환
2. 취소 신청서 제출 시 대관 시작일까지 10일 미만 남은 때 : 납부액 80퍼센트 반환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대관이 취소되거나 중지되는 경우에는 납부한 대관료 중 사용하지 아니한 일수에 해당하는 대관료 납부액의 전액을 반환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관시설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국가적 행사, 서울특별시 또는 어울림플라자의 관리·운영 위탁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대관 시설의 사용이 취소 또는 중지된 경우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어울림플라자 이용료 부과기준 (제3조 관련)

구분	프로그램	단위	이용료	
			평일	주말 및 공휴일
연 수 교 육	- 연수프로그램 - 장애유형별 /생애주기별 교육	반일(4시간)	15,000원~50,000원	- 평일 이용료의 20% 가산
		전일(8시간)	30,000원~100,000원	
	- 연수캠프	1박 2일(12시간)	150,000원	
		2박 3일(18시간)	225,000원	
생 활 문 화 생 활 체 육	- 이벤트성 프로그램	당일	5,000원~50,000원	
	- 상설 프로그램	1개월	40,000원~100,000원	
	- 퍼스널 트레이닝	10회	360,000원	
	- 자유헬스	1개월	70,000원	
수 영 장	- 장애 유형별 1:1 수영	1회	100,000원	
	- 수영교실	1개월	80,000원	
	- 자유수영	1개월	65,000원	
		1회(50분 기준)	5,000원	
	- 레인대여	1시간(15명 기준)	70,000원	
연 수 객 실	숙박(1실)	1박	140,000원	

※ 일반 프로그램 기준 이용료이며, 그 밖에 무료 또는 이벤트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음

※ 프로그램에 따라 조례에서 정한 기준금액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음

※ 재료비 및 악기 프로그램의 경우, 별도 금액이 적용됨

[별표 2]

어울림플라자 시설 이용료 감면율 (제4조1항 관련)

대 상	감면율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그 자녀	50%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그 자녀	50%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동반 1인까지 50% 감면	50%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50%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50%
6.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	50%
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50%
8.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50%
9. 「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족	50%
10. 65세 이상 어르신 - 수영장 제외	50%
11. 어울림플라자 운영으로 인해 소음과 빛 등 생활공해, 사생활 제한 등의 불편이 발생하는 곳으로 시장이 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30%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감면율이 가장 큰 사유 하나만 적용

[별표 3]

어울림플라자 시설 대관료 및 감면율 (제7조 관련)

○ 대관료(공연장, 다목적강당)

시설명	위치	면적	대관료(회당)	
			평일	기타*
공 연 장	지하1층~1층	516.26㎡ (156평)	(오전) 400,000원	(오전) 540,000원
			(오후) 500,000원	(오후) 600,000원
			(야간) 550,000원	(야간) 720,000원
다 목 적 강 당	지하2층	402.21㎡ (121평)	(오전) 350,000원	(오전) 420,000원
			(오후) 400,000원	(오후) 480,000원
			(야간) 450,000원	(야간) 540,000원

☞ 기준시간 : 회당 4시간(1회(오전) 10:00~14:00 / 2회(오후) 14:00~18:00 / 3회(야간) 18:00~22:00)

* 기타 : 토요일 오후-야간(오전 제외), 일요일·공휴일

☞ 기준시간을 초과하여 대관하는 경우 초과 시간당 기준액의 150% 적용

○ 대관료(문화교실, 대회의실, 세미나실, 분임토의실)

시설명		위치	면적	대관료(1시간)	
				평일	주말 및 공휴일
문 화 교 실	1	지하2층	41.88㎡(12평)	30,000원	36,000원
	2		42.24㎡(12평)	30,000원	36,000원
대 회 의 실		3층	385.73㎡(116평)	120,000원	144,000원
세미나실	1	3층	83.27㎡(25평)	50,000원	60,000원
	2		83.68㎡(25평)	50,000원	60,000원
분 임 토 의 실		3층	48.00㎡(14평)	30,000원	36,000원

☞ 1시간 이내 초과 시는 다음시간 이용료 적용

○ 장애인 단체인 행사 대관료 감면율

대 상	감면율
1.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 단체(시설)가 주관하는 비영리 목적의 행사인 경우	50%
2. 장애예술인 및 장애예술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인 경우	
3.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공연·행사인 경우 - 서울시 장애인단체활동 및 행사 공모사업 및 관련 서울시 지원사업 - 장애인 개인, 사회복지기관	30%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이용하는 복지문화시설로 조성하는 어울림플라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다른 규칙과의 관계에 관한 사항(제1~2조)
- 나. 어울림플라자 시설이용에 관한 사항(제3~5조)
 - 이용료 부과징수, 감면대상자별 감면율 및 반환 등
- 다. 어울림플라자 대관에 관한 사항(제6~8조)
 - 대관 허가취소, 대관료 부과감면범위 등

◆ 서울특별시규칙 제4753호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6년 1월 19일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청소년시설운영자”를 “청소년시설 운영자”로, “경우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경우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별표1”을 “별표 1”로 한다.

제3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청소년직업체험센터”를 “청소년미래진로센터”로, “직업체험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함으로써 직업에 대해 이해하고”를 “미래진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함으로써 진로에 대해 이해하고”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직업체험”을 “미래진로”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직업체험활동”을 “진로체험활동”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청소년직업체험센터”를 “청소년미래진로센터”로 하고, 같은 조에 제13항 및 제1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⑬ 청소년음악센터는 청소년 음악활동을 지원·육성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사업영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음악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청소년의 창의성 향상을 위한 음악·창작 프로그램 운영
3. 학교 및 지역사회와 연계한 음악 프로그램 운영
4. 청소년 음악교육 및 창작활동에 관한 동향조사 및 정책연구
5. 청소년을 위한 음악공연 프로그램 기획·운영
6. 그 밖에 청소년음악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⑭ 청소년자립지원관은 자립이 필요한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사업영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정 밖 청소년 보호·자립지원 사업
2. 시설 퇴소 이후 자립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발굴 및 안정적인 주거 지원
3. 자립 훈련 프로그램 제공, 퇴소 후 사후관리 등 자립지원서비스 제공
4. 자립지원수당지원 대상자 및 쉼터 퇴소 청소년 임대주택 대상자 관리
5. 그 밖에 청소년자립지원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제1항 중 “별표2” 를 “별표 2” 로 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설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업무 수행 상 조직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시장과 사전협의를 거쳐 별도의 조직을 구성” 을 “업무 수행상 연내 조직·정원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별도 조직·정원을 운영” 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① 청소년시설의 조직·정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연간 사업계획 수립 시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의 사전 승인을 받아 정한다.

제8조 중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 을 “시장” 으로 한다.

제12조제1호 중 “대표 : 65세” 를 “대표: 65세” 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직원 : 60세” 를 “직원: 60세” 로 한다.

제28조 중 “대하여” 를 “대해서” 로 한다.

제29조 중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을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으로 한다.

제30조 중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을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으로 한다.

제31조제3항 중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를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로 한다.

제32조제3항 중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를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로 한다.

제35조 중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8조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4” 를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8조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4” 로 한다.

제36조제1호 중 “비상 시” 를 “비상시” 로 한다.

제37조제2항 중 “운영자가 수립하는 사업계획은” 을 “운영자는” 으로, “감안하여” 를 “감안하여 사업계획을” 로 한다.

제8장(제50조부터 제59조까지)을 삭제한다.

제60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장 운영규정 및 기록물관리

제60조 앞의 “제9장 운영규정 및 기록물관리”를 삭제한다.

제61조제1항 중 “기록물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을 “기록물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을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으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삭제하고,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6호서식까지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시립청소년시설 신규 시설, 종료 시설, 명칭변경 등 변경사항을 현행화하며, 시립청소년센터 세부 조직·정원 규정을 시행규칙에서 삭제하고 매년 ‘사업계획’ 서울시 승인 절차로 일원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청소년시설 운영 종료내용·명칭변경 현행화(제3조)
- 나. 청소년시설 조직·정원 현행화(제7조 및 별표1·2)
 - － 대내외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직 및 정원을 기존 규칙(별표)에서 삭제하고, 매년 ‘사업계획’ 서울시 승인 절차로 일원화
- 다. ‘노동청소년 임대아파트’ 사업 종료에 따른 조문 삭제(제8장)

◆ 서울특별시규칙 제4754호

서울특별시 환경보건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환경보건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6년 1월 19일

서울특별시 환경보건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후단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으로 한다.

제3조제2항 후단 중 “조대상자”를 “조사대상자”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본문 중 “제12조”를 “제16조”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 어린이활동공간 안전관리 권고기준 조항의 인용 조문을 현행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인용조문 현행화(제5조제1항)
- 나. 그 밖에 문구 정리

◆ 서울특별시규칙 제4755호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6년 1월 19일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2호 중 “법인등기부등본” 을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로 한다.

제56조부터 제64조까지를 각각 제57조부터 제65조까지로 하고, 제56조 및 제56조의2부터 제56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6조(도매시장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① 조례 제43조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거래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 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가목 및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시 도매시장 업무 부서장 또는 공사 유통관리업무 총괄 부서장(본부장 등)

2. 위촉직 위원

가. 출하자를 대표하는 사람

나.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다. 도매시장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소비자단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6조의2(위원장의 직무) ①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며,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6조의3(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①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전문위원회에는 제56조제2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④ 조정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

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의 해촉, 제척·기피·회피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 및 제9조에 따른다.

제56조의4(분쟁의 조정 등) ① 도매시장 거래 당사자 간에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당사자는 조정 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쟁조정을 신청받은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개회하기 전에 사전 조정을 실시하여 분쟁 당사자 간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③ 분쟁조정을 신청받은 조정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분쟁 사항을 심의·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분쟁 당사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조정위원회는 참석위원 전원이 서명한 별지 제33호서식의 심의·조정안 의결서를 작성하여 분쟁 당사자에게 전달하여야 하고, 당사자는 심의·조정안에 동의하면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⑤ 조정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그 밖에 분쟁조정에 관한 세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6조의5(분쟁조정관의 임명·위촉자격·운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분쟁조정관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1. 변호사 또는 경매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10년 이상 도매시장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도매시장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을 갖춘 사람

② 분쟁 당사자는 제56조의4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을 하기 전에 분쟁조정관에게 책임 소재의 판단, 손실 지원의 수준 권고·제시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62조(중전의 제61조) 제1항 전단 중 “제60조제3항”을 “제61조제3항”으로 한다.

제64조(중전의 제63조) 제1항 본문 중 “제62조제1항”을 “제63조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처리기한란 중 “7일”을 “3일”로 하고, 별지 제15호서식 처리기한란 중 “7일”을 “3일”로 하고, 별지 제3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33호서식] (56조의4제4항 관련)

도매시장 분쟁조정위원회 심의 · 조정안 의결서

가. 신청명 :

나. 신청인 및 피신청인 :

다. 신청취지 :

라. 조정(안) :

※ 필요시 별지 사용 가능

마. 조정(안) 의결사항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8조의2에 의하여 위 사건에 관한 조정안을 위와 같이 수락권고합니다.

바. 참석위원 의결

구 분	소 속 및 직 위	성 명	의결사항		서명
			찬성	반대	
위 원 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개정 사항과 민원 처리기한 정비 등 도매시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개정에 따른 사항 반영

- 도매시장거래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련 조항 신설(제56조, 제56조의2, 제56조의3, 제56조의4, 제56조의5)
- 도매시장 분쟁조정위원회 심의·조정안 의결서 신설(별지 제33호서식)

나. 민원 처리기한 정비 및 상위법령에 따른 용어 정리

- 산지유통인 등록 신청서 및 구매자 신고서 처리기한 변경(별지 제11호, 제15호서식)
- 「상업등기법」의 공식 용어인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변경
(제31조제1항제2호)

◆ **서울특별시규칙 제4756호**

서울특별시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6년 1월 19일

서울특별시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부서장은 업무에 지장이 없는 경우 일직근무자(재택일직근무자를 제외한다)를 근무가 끝난 다음 정상근무일로부터 6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③ 부서장은 업무에 지장이 없는 경우 숙직근무자(재택숙직근무자를 제외한다)를 숙직 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숙직근무 종료시간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나 숙직근무자가 업무상 부득이한 사유로 숙직 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에 휴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

④ 복무 및 보안 관련규정 등을 위반하여 당직 명령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제2항 및 제3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조제1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각”을 “제1항제3호의”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이를 지체없이 관련부서에 연락하거나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를 “지체없이 관련부서나 기관에 연락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당직근무자는 제3항에 따른 상황이 발생한 경우 기관의 장(본청 당직근무자는 시장, 소속기관 당직근무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당직 근무자의 당직 휴무 사용기한을 연장하여 휴식권을 보장하고, 미비하고 현 제도와 맞지 않는 부분들을 현행화하여 보완·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당직근무자의 당직휴무 사용기한 연장(제6조제2항 및 제3항)
- 나. ‘복무 및 보안 관련 규정 등 위반 당직자’ 관련 규정 추가(제6조제4항 신설)
- 다. 당직실 비치 물품 중 ‘향토예비군비상소집 명부’와 ‘민방위대원비상소집 명부’를 제외(제11조제1항)
- 라. 당직자의 일반의무 정비
 - ‘접수된 문서나 발생한 업무가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사항일 때’의 연락대상 추가(제13조제3항)
 - 기관장에 대한 보고절차 관련 자구 수정(제13조제4항 신설)

◆ 서울특별시규칙 제4757호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6년 1월 19일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단서 중 “정하는 자격증”을 “별도로 추가하여 고시 또는 공고하는 자격증”으로, “필기시험의”를 “가산하는 점수의 비율은 필기시험의”로, “최고점으로 임용권자가 정하는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를 “최고점으로 하여 임용권자가 정하여 고시 또는 공고한다”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 임용권자가 전문경력관을 신규임용 시 전문경력관 신규임용 특전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절차를 명문화하여 채용 과정의 예측 가능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임용권자가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별표에서 정한 자격증 외 전문경력관 신규임용 가산 대상 자격증 및 가산 비율을 추가하고자 할 때 고시 또는 공고하여야 함을 명시

◆ 서울특별시규칙 제4758호

서울특별시 청원경찰 징계 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청원경찰 징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6년 1월 19일

서울특별시 청원경찰 징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위원장은 행정국장”을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인사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위원은”을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으로, “과장·담당관 중”을 “과장·담당관 및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여”로, “이내의 위원으로”를 “이내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위원회의 운영은 위원장이”를 “위원장은”으로, “회의를 소집·운영하며”를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고 한다)를 소집·운영하며, 회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5항) 중 “제3항”을 “제5항”으로, “이외”를 “이외에”로 한다.

⑤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때에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심사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자기가 직접 담당하는 사무와 관련되는 회의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 청원경찰과 공무원의 징계 의결권자를 통일하고 징계 대상자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청원경찰 징계위원회 위원 구성을 변경하려 함

2. 주요내용

- 가. 청원경찰징계위원회 위원장을 행정국장에서 인사과장으로 변경(제3조제2항)
- 나.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여 위원회 구성(제3조제3항)
- 다. 외부 전문가 및 직무 관련 없는 공무원 위원에게 수당 지급 근거 마련(제3조제5항)

◆ 서울특별시규칙 제4759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6년 1월 19일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제출하고, 신청인 및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관하여 구청장에게 전산 검색을 의뢰”를 “제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에 따른 전산검색 등을 거쳐 주택 소유자로 판명되거나 그 밖의 자격요건”을 “자격요건”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시 주택소유 여부 전산검색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인가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단계에서 중복으로 시행되는 세입자 무주택여부 전산조회 절차를 1차례로 축소하여 신속한 주택공급 확대를 추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에서의 임대주택 신청인 및 세대원 전원의 무주택여부 전산검색 의뢰 절차를 생략 (제15조)

◆ 서울특별시규칙 제4760호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6년 1월 19일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1호 중 “30퍼센트”를 “100분의 30”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50퍼센트”를 “100분의 50”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0조제3항제4호”를 “제20조제4항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0조제3항”을 “제20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제20조제3항제1호”를 “제11조제4항제1호”를 “제11조제5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1조제4항제2호”를 “제11조제5항제2호”로 한다.

④ 조례 제20조제3항에 따른 별표 3의 운동시설 이용료의 감면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공원입장료(제8조 관련)

공 원 별		사용기준	금 액(원)	비 고
서 울 대공원	동물원	어 른 1회 청소년 1회 어린이 1회	5,000 3,000 2,000	◦ 단체의 경우에는 30% 이내에서 할인할 수 있다.
	테마가든 (어린이동물원 및 장미원)	어 른 1회당 청소년 1회당 어린이 1회당	2,000 1,500 1,000	◦ 입장료에 시설 이용료를 포함하거나 기업 및 단체와 협약에 따라 입장료나 이용료를 일부 부담하는 기획상품 등은 공원관리청이 따로 할인요금을 정할 수 있다.
※(주) ◦ 어린이 : 6세 이상 12세 이하 ◦ 청소년 : 13세 이상 18세 이하 ◦ 어 른 : 19세 이상 ◦ 단 체 : 30명 이상 동일한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				

[별표 3]

공원 및 공원시설 이용료(제8조 관련)

공원별	종 별	사용 기준	금 액(원)		비 고	
			체육경기	기타행사		
공 통	잔디광장		1㎡당,		20	1. 토, 공휴일은 이용료의 30% 가산 2. 야간은 주간이용료의 30% 가산 (토, 공휴일은 제외) 3. 2시간 초과시 시간당 이용료의 50% 4. 풋살장의 청소년 이용료는 30% 할인. 단, 어린이는 무료.(이 경우 청소년 및 어린이의 팀 구성원 비율이 50% 이상일 때 적용) 5. 테니스장의 월 개인연습 이용권은 해당 이용 료에 2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6. 시간당 이용 및 이용료 징수 가능
	일반운동장(광장)		2시간		5 10	
	축구장	잔디	1회 2시간	120,000	300,000	
		인조잔디		55,000	110,000	
	풋살장	10인용		25,000		
		6인용		15,000		
	테니스장	실 외	1면당, 2시간당	8,000		
		실 내	1면당, 2시간당	25,000		
	파크골프장		어 른 1회당 청소년 1회당 어린이 1회당	4,000 3,000 2,000		
	파크골프장 물품대여료		클럽(1회당, 개당)	1,000		
	야영장 (캠핑장)	일반	야영장소 1회당	10,000		1회 이용은 1박 2일 기준
		전기료	전기이용료 1회당	3,000		
		캠ป์시설	바비큐존 ·1회당(4인용) ·1회당(8인용) ·1회당(12인용)	10,000 15,000 20,000		1차 11:00~16:00 2차 17:00~22:00
	야영장(캠핑장) 물품대여료	일반 야영텐트 1회당		5,000		1회 이용은 1박 2일 기준
		1인용 매트 1회당		1,000		
	사진·영상 촬영 및 녹화	1시간당		13,000		영화, TV드라마, CF촬영 등 영리목적 촬영에 한함. 다만, 홍보 및 마케팅 목적으로 필요하 고 판단되는 경우 면제 가능.
		초과 시간당		6,500		
	강의실	1㎡당, 1시간당		200		1. 회의실 등 강의실과 유사한 형태나 용도를 가 진 시설 포함 2. 부대시설 및 장비 이용료는 별도 산정 3. 냉난방기를 가동할 때에는 시설의 공간별로 요금을 정하여 별도 산정
공연장 (복합문화공간 포함)	1㎡당, 1시간당		100		1. 부대시설 및 장비 이용료는 별도 산정 2. 실내공간에 한함. 단, 필요한 경우 옥상공간 을 포함 3. 냉난방기를 가동할 때에는 시설의 공간별로 요금을 정하여 별도 산정	

공원별	종 별	사용 기준	금 액(원)		비 고
			체육경기	기타행사	
	국공장	1일(3시간)	3,000		
		1개월	30,000		
	입장권 발매행사	입장권을 발매 하는 유료행사	입장권 발매총액의 10%		◦ 공원의 시설이용료는 공원관리청이 정하며 위탁관리자가 공원시설의 이용자로부터 이용료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행 전에 공원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공원관리청은 위탁관리자가 신고한 이용료가 부당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공원별	종 별	사용 기준	금 액(원)		비 고
			체육경기	기타행사	
남 산 공 원	남산 차량통행료	승합자동차 (16인승 이상)	6,000		1. 순환버스·시티투어버스·긴급 및 통행허가차량·장애인콜 택시·장애인심부름센터차량은 무료. 2. 환경친화적 차량(CNG, CNG하이브리드, 전기사용자동 차) 또는 2015년 이후 제작된 자동차는 남산 차량통행 료의 50%를 감면함.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15인승 이하)	4,000		
서울 대공원	성인 야구장	1일	80,000	200,000	1. 토, 공휴일은 이용료의 30% 가산 2. 야간은 주간이용료의 30% 가산(토, 공휴일은 제외) 3. 야간은 전기료 별도 산정 4. 전광판 이용시 전광판 이용료 별도 산정 5. 리틀야구장은 주간만 운영
		3시간	50,000		
	리틀 야구장	1일	40,000	100,000	
		3시간	25,000		
	서울대공원 캠핑장	어 른 1회당 청소년 1회당 어린이 1회당	2,000 1,500 1,000		
어린이 대공원 · 서울숲	야외무대 이용료	주간 1회 2시간	100,000		
중랑 캠핑숲	청소년 체험의 숲	어 른 1회당	10,000	평일 단체 이용시 30% 할인	
		청소년 1회당	7,000		
		어린이 1회당	5,000		
	캠핑장	일반/오토캠핑	30,000	전기료 별도 산정	
		글램핑	90,000		
중랑캠핑장 야영텐트	1회당	10,000			
불암산	더불어숲 (챌린지 로우코스)	어른 1회당	10,000	1. 평일 단체 이용시 30% 할인(30인 이상) 가. 단체 할인 적용시 별도 할인 미적용 (코스연계 할인 미적용) 2. 2개 코스 이상 이용시 10% 할인 3. 챌린지액티브코스는 터널메이즈와 짚코스터 또는 플라잉팩스로 구성되며 개별시설 이용료는 다음과 같음 가. 터널메이즈 : 어른 5,000원, 청소년 4,000원, 어린이 3,000원	
		청소년 1회당	7,000		
		어린이 1회당	5,000		
	더불어숲 (챌린지 하이코스)	어른 1회당	8,000		
		청소년 1회당	6,000		
		어린이 1회당	4,000		

공원별	종 별	사용 기준	금 액(원)		비 고
			체육경기	기타행사	
	더불어숲 (챌린지 액티브코스)	어른 1회당 청소년 1회당 어린이 1회당	8,000 6,500 5,000		나. 짚코스터 또는 플라이팩스 : 어른 3,000원, 청소년 2,500원, 어린이 2,000원
일자산	강동그린웨이 가족캠핑장	오토/데크캠핑	25,000		전기료 별도 산정
초안산	캠핑장	일반캠핑 (주차분리형)	25,000		1. 전기료 별도 산정 2. 주차요금 포함(1면당 1대) 가. 추가 주차 시 별도 산정
		오토/데크캠핑	28,000		
		캐빈하우스	30,000		
천왕산	캠핑장	일반/오토캠핑	30,000		1. 전기료 별도 산정 2. 주차요금 포함(1면당 1대)
앵봉산	캠핑장	일반/오토캠핑	30,000		전기료 별도 산정
		글램핑	90,000		
○ 어린이 : 6세 이상 12세 이하 ○ 청소년 : 13세 이상 18세 이하 ○ 어 른 : 19세 이상 ○ 단 체 : 30명 이상 동일한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 ○ 주·야간 구분 ▷(11월 ~ 2월) — 주간 : 09:00 - 18:00 야간 : 18:00 - 24:00 ▷(3월 ~ 10월) — 주간 : 09:00 - 19:00 야간 : 19:00 - 24:00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도시공원 내 운동시설 이용료 감면 기준을 구체화하고, 중랑캠핑숲 등 공원시설의 이용료를 현실화하여 시민 이용 편의를 높이고 운영의 합리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도시공원 내 운동시설 이용료 감면 세부 기준 마련(제11조제4항 신설)
- 나. 서울식물원 공원입장료 규정 삭제(별표 2)
- 다. 중랑캠핑숲 등 공원시설 이용료 조정 및 문구 정비(별표 3)

◆ 서울특별시규칙 제4761호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6년 1월 19일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제5조의2제3항제5호”를 “제5조의2제3항제6호”로, “구청장 주관행사시”를 “구청장이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에”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물재생시설 내 편익시설 사용시간, 사용료(제2조1항 관련)

1. 서남물재생시설의 편익시설 중 테니스장, 탁구장 및 파크골프장

구 분		기준 및 사용료	비 고
테니스장	사용료 (1면, 1시간 기준)	5,000원	
	조명 사용료 (1면, 1시간 기준)	5,000원	사용료 감면 적용 제외
탁구장	사용료 (1면, 2시간 기준)	3,000원	
파크골프장	사용료 (1회, 2시간 기준)	3,000원	매 주 월 휴무
	골프용품 대여료 (1회, 2시간 기준)	1,000원	사용료 감면 적용 제외

2. 탄천물재생시설의 편익시설 중 마루공원 주차장, 테니스장

구 분			기준 및 사용료	비 고
주차장	1회주차 (10분당)		200원	
	월정기권 (비주거자)	전일	70,000원	
		주간	50,000원	
		야간	20,000원	
테니스장	조명사용료	1시간 기준	5,000원	사용료 감면 적용 제외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서울특별시조례 제9803호, 2025.9.29.)에 따른 규칙 위임사항을 반영
 - 서울시 물재생센터 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현황을 반영하여 시설 사용료 부과기준을 현행화함으로써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서남물재생센터 테니스장 및 탁구장 전용 사용료 폐지(별표1)
- 나. 서남물재생센터 사물함 임대료 폐지(별표1)



기관의 장	
선	
람	

공 람									